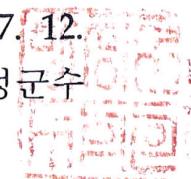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94

제출일자 : 2017.12.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된 도로법의 도로 점용료 징수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가. 자치법규의 합법성 부여

나. 도로점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적용에 있어 주민 접근성 및 일선 행정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상승률(전년도 납부 점용료의 100분의 10) 한계 규정(안 제3조의

2) 개정

나. 신설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반영 및 적용 규정 명확화(안 제4조의 1항 및 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 개선 권고 사항 수용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 개선 권고 사항 수용
-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1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의견 00건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도로법 제68조”로, “증가율에 따라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설치하는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 3. 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
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생 략)</p> <p>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u>제1항</u>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u>증가율</u>에 따라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 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u>설치하는 사업</u></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1항 및 도로법 제68조</u>----- ----- ----- ----- <u>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 <u>설치하는 사업(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u></p>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생 략)

3.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

4. (현행과 같음)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 7. (현행과 같음)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

-----.

1.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현행과 같음)

3. 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

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생 략)

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현행과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